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내 용

충청남도에서는 농식품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산을 실시한 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등 9개 시·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정산서, 입출금 통장내역 등)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기간(2017. 11. 15.~12. 1.) 중 증빙서류 등을 재확인 한 결과, 아래 [표1]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의 20개 사업 및 [표2]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미반납 내역’ 5개 사업과 같이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3,082,053,000원) 및 발생한 이자(1,353,880원)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표2]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시군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미반납액	비고
			20개 사업	20,348,580	12,147,094	8,233,245	5,119,333	3,082,053	국고
2014	천안시	지특	○○○○○○○○○○○○○○	344,000	281,626	62,374	-	62,374	
	공주시	일반	○○○○○○○○○○	50,000	28,097	21,903	-	21,903	
	아산시	농특	○○○○○○○○○○	150,000	141,007	8,993	-	8,993	
	보령시	지특	○○○○○○○○○○ (○○○○○○○○○○)	203,000	199,780	3,220	-	3,220	
	당진시	지특	○○○○○○○○○○	114,429	102,930	11,499	-	11,499	
	청양군	지특	○○○○○○○○○○ ○○○○	1,003,000	789,286	213,714	200,822	12,892	
		지특	○○○○○○○○○○	6,479,390	3,911,674	2,567,716	2,482,486	85,230	
2015	천안시	농특	○○○○○○○○○○	391,100	267,741	123,259	107,610	15,649	
	공주시	일반	○○○○○○○○○○○○	714,000	711,410	2,590	-	2,590	
		일반	○○○○○○○○○○	457,000	422,581	34,419	29,714	4,705	
		일반	○○○○○○○○○○	648,670	645,131	3,539	-	3,539	
	서산시	지특	○○○○○○○○○○○○	800,000	796,974	3,026	-	3,026	
	부여군	지특	○○○○○○○○○○○○○○	4,797,700	2,602,915	2,194,785	2,178,701	16,084	
	청양군	지특	○○○○○○○○○○○○	519,369	513,317	6,052	-	6,052	
		지특	○○○○○○○○○○ ○○○○	600,822	474,822	126,000	120,000	6,000	
	태안군	지특	○○○○○○○○○○	210,000	207,703	2,297	-	2,297	

사업연도	시군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차년도 이월액	미반납액	비고
2016	아산시	지특	○○○○○○○○○○○○○○	1,008,600	-	1,008,600	-	1,008,600	사업포기
	서산시	일반	○○○○○○○○○ ○○○○○	37,500	-	37,500	-	37,500	사업포기
	당진시	지특	○○○○○○○○○○○ ○○○○○○○	1,760,000	-	1,760,000	-	1,760,000	사업포기
	천안시	농안	○○○○○○○○○	60,000	50,100	9,900	-	9,900	전년도이월금 반납

[표2]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미반납 내역

사업연도		회계	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추진현황			발생 이자 (원)	미반 납액 (원)	지원 비율 (%)
					보조금액 (천원)	보조금 교부일	사업 정산일			
			5개사업					1,353,890	1,353,880	
2014	천안시	지특 회계	○○○○ ○○(○○ ○○○)	○○○○ ○○○○ ○○○○	750,000	'14.6.10	'14.12.31	254,897	254,890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2015	천안시	지특 회계	○○○○ ○○(○○ ○○○)	○○○○ ○○○○ ○○○○	1,000,000	'15.7.10	'15.12.31	359,321	359,320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2016	천안시	지특 회계	○○○○ ○○(○○ ○○○)	○○○○ ○○○○ ○○○○	450,000	'16.7.18	'16.12.31	178,192	178,190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보령시	지특 회계	○○○○ ○○(○○ ○○○)	○○○○ ○○ (주)○○ ○○○	858,000	'15.10.30	'16.12.29	249,208	249,200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청양군	지특 회계	○○○○○ ○○○○○ ○○○	○○○○○	800,000	'15.11.6	'17.3.20	312,280	312,280	국비:50 지방비:30 자부담:20

※ 미반납액 원단위 절사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태안군수는

[시정] 사업이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3,082,053,000원)은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장, 보령시장, 청양군수는

[시정] 사업이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1,353,880원)는 해당사업 지원비율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 세입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정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